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85호 | 발행인 : 박상희 | 발행일 : 2021년 1월 26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는 입양을 위한 국내입양과정의 단계별 개선점

I. 정인이 사건을 마주하며

지난해 10월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아동 여부에 있지 않지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는 입양이 되기 위해 입양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함.

- 2020년 10월, 부모의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영아(정인)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부모는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밝혀짐.
 - ▶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부모와의 분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의 입양허가 후 1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움이 큼.
 - ▶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입양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우려와 함께 입양절차의 공적 개입 강화 및 입양허가 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에 있지만 정인이가 해당 가정에 입양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음. 이에 입양제도에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를 조명할 필요가 있음.
 -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입양여부를 배제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본고에서는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제4조)는 관점에서 국내입양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을 입양과정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함.



[그림 1] 국내입양과정 단계별 점검 사항

II. 입양허가 전

① 입양부모의 부모됨 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

- 예비양부모의 입양신청 후, 입양부모교육 및 양친자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입양기관이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자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입양아동과 입양부모는 일반 가정과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또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부모교육이나 상담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지자체나 입양기관에서 양친자격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정조사와 상담 시 입양에 대한 태도와 입양동기, 가족상황, 수입 및 재산상태, 알코올 등 약물중독 여부와 건강상태, 인격·품성 및 종교관 등을 조사함(입양특례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현행 입양부모교육은 일반적인 자녀양육과 입양가정으로서 특별한 이슈를 모두 다루기에 그 시간과 내용이 부족한 실정임.

▶ 입양아동은 일반아동과 생애초기경험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고, 입양부모는 임신·출산 과정을 입양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함.¹⁾

▶ 우리나라 입양부모교육 시간은 8시간으로, 해외(18~30시간)에 비하여 약 1/3 수준에 불과함.

〈표 1〉 입양부모교육 해외 사례

구분	영국	미국
기간	• 총 2개월 동안 2단계로 진행 -1단계: 8시간 이상, 2단계: 18시간 이상	• 3시간씩 10주간 과정 -총 30시간
내용 구성	• 입양아동과 입양절차에 관한 기초 정보, 입양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아동의 초기경험에 대한 이해 등 심화된 내용 포함	• 입양부모 자신의 역할 수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

자료: 1) 영국: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pp.207-208.

2) 미국: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p.206.

▶ 따라서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질적·양적으로 보완하고, 예비양부모의 특성(난임, 친생 자녀 유무 등)과 아동의 특성(연령, 장애여부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양친자격조사 시, 개별적인 상담과 검사가 이루어져 예비양부모의 부모됨(parenting) 과정을 지원해야 함.

▶ 현행에서는 실제 자녀양육이나 가치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이에 관하여 전문 인력의 상담과 객관적인 검사도구 활용을 통해, 양부모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여 입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입양실무자에게는 양부모 자격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자료로 제공되어야 함.

㉔ 사전위탁의 입법화와 관리체계 마련

● 현재 법원 입양허가 전, 대부분 예비입양가정에서 사전위탁²⁾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관리체계가 없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사전위탁 의무화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애착형성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입양 적응기간을 갖기 위해서 사전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분위기임.

▶ 사전위탁에 대한 규정이 「입양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사전위탁 관리나 지원도 미흡하므로 입법 및 규정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양친자격조사 시 실제 자녀양육이나 가치관에 대한 전문인력의 상담이나 검사가 병행되어야 함.

입양허가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양부모 사전위탁의 법적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1) 배운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0.

2) 입양대상아동은 시설이나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가정(일반 가정위탁과는 다름)에서 보호되다가 예비양부모와의 결연 이후에는 대부분 예비양부모의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음.

-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입양허가 전 사전위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과 양부모의 적응을 돕고 입양 최종허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여기고 있음.

〈독일민법 제1744조〉 독일의 경우 사전위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간 동안 예비입양가정은 관할 입양알선 기관과 아동청의 관찰과 상담을 받음.³⁾
 〈필리핀 국내입양법〉 필리핀에서는 아동과 예비양부모가 서로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감독 조건부 시험양육(supervised trial custody)’을 시행함. 이는 사회복지개발부의 허가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⁴⁾

- ▶ 우리나라도 법원 입양허가 전 사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과 입양허가 판단을 위해 예비양부모에 의한 위탁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위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화뿐만 아니라 사전위탁기간 동안 아동의 복리 증진과 입양가정의 적응 향상을 위한 관리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 기본 부모교육 이외에 위탁기간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추가로 교육받도록 하여 입양허가 이전이라도 예비양부모가 자녀양육에 있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⁵⁾

- ▶ 사전위탁 목적, 기간,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때에 특히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등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함. 사전위탁 관리감독은 지자체나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입양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동일한 지침이 보급될 필요가 있음.

- ▶ 사전위탁 동안 가정조사를 통해 아동의 적응과 부모-자녀관계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아동과 양부모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입양허가를 위한 자료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다만, 사전위탁은 예비양부모의 자격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전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적절한 판단, 아동-예비양부모 결연의 전문성·타당성 확보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함. 또한 아동학대 등의 위중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위탁 동안(결연 이후) 입양여부가 변경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함. 이는 아동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임.

Ⅲ. 입양 허가 후: 입양가정 사후관리 내실화

- 「입양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정하고 있음.

- ▶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1년간은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내 4회 이상, 4회 중 최소한 2번은 가정방문 후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⁶⁾

- ▶ 가정방문 시 아동과 양부모의 관계,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상태, 가정환경을 파악하며,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경우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⁷⁾

- 사후관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입양가정은 실무자와의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아동의 양육과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사전위탁 목적, 기간, 관리·감독 방법 등의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아동 적응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아동과 양부모 지원 및 입양허가의 근거로 활용해야 함.

입양가정 사후관리는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지원이 되어야 함.

3) <https://www.kinderinfo.de/kind/adoption/#Ablauf-eines-Adoptionsverfahrens> (2020. 11. 12. 인출), 김아름·배운진·신혜원·최윤경(2020). 공적 결연 모델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아동권리보장원·육아정책연구소. p.49에서 재인용.

4) 필리핀 국내입양법(Domestic Adoption Act of 1998, Republic Act No. 8552), 배운진·이정림·김아름·최윤경(2017). 입양 전 위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육아정책연구소. pp.25-2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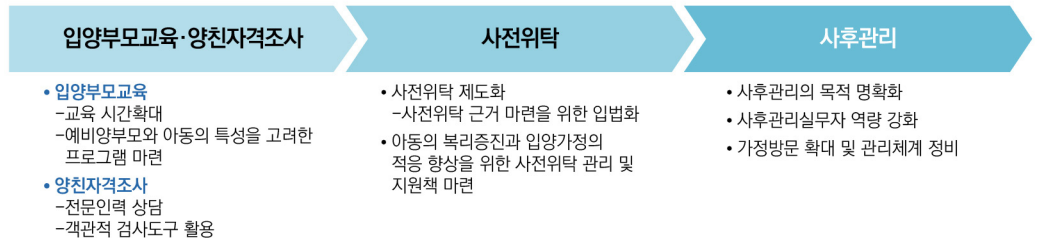
5) 배운진·이정림·김아름·최윤경(2017). 입양 전 위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육아정책연구소. p.114.

양부모의 협조 및 실무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가정방문 횟수를 늘려서 입양가정의 생활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 사후관리는 단순히 양부모의 양육태도 관찰이나 아동학대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며 입양의 목적에 따라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지원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함.
- ▶ 양부모는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실무자는 가정방문을 통해 입양가정의 다양한 측면을 관찰·판단하며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 1년 내 4회, 특히 가정방문 2회가 아동의 적응수준을 판단하기에 부족할 수 있고 전화와 서류상의 관리는 형식적일 수 있음. 가정방문을 4~6회로 늘려서 입양가정의 생활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함(입양가정별로 지원내용이나 이슈에 따라 방문횟수 조절 가능).
- ▶ 입양기관에 사후관리를 모두 맡기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대응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관리체계도 정비되어야 함.

IV. 맺음말

- 본고에서 제안한 입양과정 단계별 국내입양제도의 개선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국내입양과정 단계별 개선점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한 입양문화가 정착되고 입양절차 전반에 공적인 성격이 강화되어야 함.

-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강한 입양문화가 정착되고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성격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자간 협력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 ▶ 입양허가(법원)를 제외한 모든 입양과정이 민간의 책임으로 진행 되는 국내입양 상황에서,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보호 및 협약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입양 전반에 있어 국가 개입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으므로, 이제는 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
 - ▶ 현행 입양제도에서 입양기관의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양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입양이 공적인 아동보호체계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입양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서 입양 업무를 위탁받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필요함.
 - ▶ 관련 실무자와 일반인은 입양허가 전후의 관리감독을 양부모가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사람이어서 조사를 받는 과정으로 오인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보호 대상인 아동에게 가정을 결정하는 일이 중대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인식해야 함.⁶⁾
-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입양이 위축되고 입양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언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아동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입양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배윤진 부연구위원 byj@kicce.re.kr

6)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pp.35-36.

7)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p.36.

8) 배윤진·이정림·김아름·최윤경(2017). 입양 전 위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육아정책연구소. pp.118-119.